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9
----------	-----

2009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5월 15일, 김덕배 의원 외 10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덕배 의원)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 3. 20. 전부개정 되어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1조 중 “제27조”를 “제25조”로 개정함.(안 제1조)
- 제4조제1호 “제27조제3항의”를 “제25조제3항의”로 개정함.(안 제4조제1호)
- 제8조제1항 “제27조”를 “제25조”로 개정함.(안 제8조제1항)
- 제8조제1항 “제41조의9의”를 “제58조의”로 개정함.(안 제8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 3. 21. 전부 개정 되어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칭규정¹⁾, 낱표(「」) 사용²⁾ 및 띄어쓰기 등이 일부 미반영되고 있는 바,

조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이해도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p. 134.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제1조 목적 규정은 제외)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한다.”
2) Ibid, pp. 212~2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9
----------	-----

발의연월일 : 2009년 5월 15일
 발 의 자 : 김 덕 배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부개정] 「여객차
 등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
 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1조 중 “제27조”를 “제25조”로 개정 함.(안 제1조)
- 나. 제4조제1호 “제27조제3항의”를 “제25조제3항의”로 개정 함.(안 제4
 조제1호)
- 다. 제8조제1항 “제27조”를 “제25조”로 개정 함.(안 제8조제1항)
- 라. 제8조제1항 “제41조의9의”를 “제58조의”로 개정함.(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그 소요비용 등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그 소요비용 등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